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 회의명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 회의일시 : 2023. 6. 28.(수) 10:02
  
-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 참석위원 : 김효재 부위원장  
김 현 상임위원  
이상인 상임위원 (3인)
  
- 불참위원 : 없 음

---

#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세 분이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좌미애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 회의록 확인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2023년도 제20차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과 관련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 김 현입니다. 지난 전차 회의에서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의결을 28일, 일정상 오늘 의결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열흘 동안 진행된 입법예고에 의한 국민 참여입법센터의 내용이 충분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위원님, 오늘 의결안건을 처리하시고,

○ 김 현 상임위원

- 속기록과 관련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그렇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지난번 속기록에 보면 제가 28일로 예정된 위원회 의결일정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 상당수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징수방법과 관련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공문 역시도 내용상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KBS 의견진술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진술을 왜 안 듣게 됐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근거 없이 28일 날 의결하기로 한 것은 순연이 됐지만 원래 제가 제기했던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어서 속기록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지만 21일 제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원안에 찬성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문제 제기하신 것을 나중에 공개회의 끝나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위원장님,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만 진행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 6. 의결사항

### 가. (주)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23-21-051 ~ 055)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의결안건 가> “(주)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사업자의 의견진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견진술에 앞서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주)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의결주문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바일펜스,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주식회사 세이프리, 주식회사 에잇스니펫 위치정보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19조 제3항을 위반한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모바일펜스,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주식회사 세이프리, 주식회사 에잇스니펫에 대해 위치정보법 제14조, 제36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3조 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경과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기본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 등을 통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파악하여 자녀안심 앱을 이용하는 자(통상 부모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형태입니다. 정보주체의 스마트폰 GPS 기능 등을 통해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형태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에 해당합니다. 서비스 요금과 관련하여 구글코리아(유)의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나머지 사업자의 경우에는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구글코리아(유)에 대한 사실관계입니다. 서비스 이용절차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구글코리아(유)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인 자녀의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구글코리아(유)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고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위법성 판단내용입니다. 먼저 정보주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구글코리아(유)는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을 뿐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인 자녀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나, 구글코리아(유)는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을 뿐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은 <붙임 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은 피심인 의견진술 후에 시정 조치안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15페이지 (주)모바일펜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실관계 중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입니다. (주)모바일펜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지 않고 '14년 10월 23일부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다가 실태점검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보주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모바일펜스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모바일펜스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고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입니다. (주)모바일펜스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관련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 (주)모바일펜스는 신고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영위하여 위치정보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용약관 동의 관련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모바일펜스는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을 뿐,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모바일펜스 역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은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을 뿐,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모바일펜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은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주)제이티통신입니다. 사실관계 중 서비스 이용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제이티통신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및 제공 목적을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고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제공목적 등을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먼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하여 (주)제이티통신 역시 제3자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였을 뿐,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았고 동의를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 (주)세이프리입니다. 사실관계 중 서비스 이용 절차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 사항입니다. (주)세이프리는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 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주)세이프리는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에잇스니핏에 관한 사항입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는 안전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정보주체의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동의 관련하여 (주)에잇스니핏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이용약관에 대한 앱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으나, 이용약관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았습니 다.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에잇스니핏은 앱 서비스 개시일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고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았습니 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입니다. (주)에잇스니핏 역시 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았습니 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각 호의 내용을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주)에잇스니핏은 앱 이용자의 동의를 얻었을 뿐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고지 및 동의 관련 사항입니다. (주)에잇스니핏 역시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앱 이용자에게만 고지하고 정보주체에게는 고지하지 않고 동의도 얻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통보 관련입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주)에잇스니핏은 이를 통보되지 않아 위치정보법 제19조 제3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사업자 제출의견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보고내용에 대해 의견청취 전에 확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견 청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진술을 요청한 피심인 측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심인 측 관계자가 입장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입장)

지금부터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 5개 사업자의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에 대한 당사자 의견진술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등 5개 사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고 아동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위치정보를 법정대리인에게 제공한 일시 등을 아동에게 즉시 통보하지 않아 위치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의견진술)에 “위원회는 심의·의결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 대상 5개 사업자 중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주식회사 에잇스니핏 3개 사업자 측에서 안전과 관련하여 의견진술을 요청함에 따라 직접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확인하겠습니다.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김봉선 변호사, 김효상 변호사 맞습니까? (“예” 하는 피심인 있음) 주식회사 제이티통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법무법인 민후의 김경환 변호사, 최주선 변호사 맞습니까? (“예” 하는 피심인 있음) 주식회사 에잇스니핏 박철우 대표이사, 서민호 팀장 맞습니까? (“예” 하는 피심인 있음) 의견진술에 따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정조치에 앞서 귀사가 제출한 의견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피심인의 의견진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여야 하며,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글코리아 유한회사의 대리인께서 이번 시정명령 등 처분 사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 ○ 이상인 상임위원

- 위원장님, 지난 월요일 간담회에서 대략적인 의견을 상세하게 들었고, 또 거기에 자료까지 첨부해서 저희에게 제출해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오늘 의견 진술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간담회 때 말한 것 외에 추가적인 부분과 특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로 요약해서 의견 진술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알겠습니다. 지금 이상인 위원님 말씀을 들으셨지요? 지난번에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는 것이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봉선 구글코리아(유) 대리인

- 유념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신 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글은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아동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부모가 14세 미만인 자기 자녀의 위치를 구글과 같은 사업자로 부터 제공받고자 할 때 부모의 동의 이외에 14세 미만 자녀의 동의를 별도로 필요한 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가 아동의 위치를 제공받는 사안이 아니며, 성인이나 고등학생이 아니라 14세 미만, 즉 주로 초등학생, 유치원생, 미취학 아동인 자녀의 사안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글은 본 건 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본 건 앱에서 광고수익도 일체 올리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말씀 올립니다. 위치정보법은 아동의 위치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에 대해서는 아동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가 그 조항이며, 제25조는 아동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아직 보호가

필요한 나이입니다.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할지 말지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능력이 부족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위치정보법은 부모가 아동을 위해 대신 결정하는 것이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았고, 그 기준은 만 14세로 설정했습니다. 의료정보법, 신용정보법 등 아동의 정보처리를 다루는 다른 법령 및 집행기관의 입장도 동일하고, 미국, EU, 일본, 호주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도 같습니다. 인권위 또한 14세 미만 아동의 앱 동의를 별도로 받으라고 권고하지 않았습니니다. 사전통지서는 위치정보법 제26조에서 정한 8세라는 기준이 아동의 동의 필요 여부를 정하는 별도의 기준이라는 입장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제26조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적용되는 조항이 아닙니다. 귀 위원회가 작년에 발간한 해설서에 따르면 제26조는 실종과 같은 상황을 예정한 조항이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령 제27조는 별도의 서면동의를 가족관계증명서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26조는 서비스 계약이 없는 상황에서 예외적이고 이례적으로 위치정보를 받을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성년인 장애인에게도 함께 적용되는 조항인데 법정대리인이 아닌 장애인보호시설의 장 등에게 적용되는 것을 고려해서 특별히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문언을 둔 것뿐입니다. 사전통지서 입장대로라면 5살 유치원생이 위치정보를 이용한 게임을 하려면 유치원생이 위치정보 약관을 읽고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생명·신체 보호와 무관하기 때문에 제26조는 적용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맞벌이부모가 초등학교 자녀의 통학버스가 언제 오는지 자녀안심 앱을 통해 알아보려면 초등학교 자녀가 동의해 주어야만 가능합니다. 제26조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어 있는 9세, 10세 초등학교생들의 경우 생명·신체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대비하고 싶어도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실제 오더라도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부모들은 자녀안심 앱으로 아이들의 위치를 바로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위치정보법의 문언에 따른 법 해석이 아니며 입법자가 의도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보호와 부모의 친권 행사에 중차대한 문제인 점을 감안하셔서 귀 위원회에서 사려 깊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대리인께서 이번 시정명령 처분 사안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 김경환 (주)제이티통신 대리인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정보법의 제25조와 제26조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25조는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9조 제1항, 제2항에 따라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라는 조문입니다. 제26조는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가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 등의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조문입니다. 해설서는 제25조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충분치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 즉, 제25조는 14세 미만 아동은 동의능력이 없으니 법정대리인이 대신 동의받으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아동 본인의 결정권 행사를 대리하는 조문입니다. 반면, 제26조에 대해서는 해설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26조는 8세 이하 아동이나 중증장애인이 실종된 경우와 같이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할 수 있게 하고 이를 결정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 외 범위와 권한을 규정한다. 아동이 실종된 경우는 아시다시피 대리가 불가능합니다. 아동 본인이 존재하지 않으니 아동 본인의 결정권 행사를 대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그래서 제26조와 같이 간주 규정을 넣어서 보호의무자가 스스로 결정권을 가지도록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의 결정권을 대리하는 제25조와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0세 신생아도 헌법상 권리인 결정권은 가집니다. 다만, 행사능력이 없으니 그 행사를 대리하는 것이 제25조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25조와 제26조는 전혀 다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다른 법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26조를 제25조의 특칙인 것처럼 이해하면 안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25조는 분명히 14세 미만 아동 전체를 규정하고 있지, 9세 이상 14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언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26조의 생명·신체의 보호규정을 가지고 마치 이것이 8세 기준으로 제25조와 제26조가 구분되는 것처럼 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26조는 생명·신체의 보호의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과 같이 오락, 생명·신체가 아닌 재산의 상황 같은 경우는 제25조로 다시 가야 합니다. 제25조가 적용되면 8세 이하의 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결론인데 8세 이하의 아동 본인의 동의를 얻는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을 보더라도 9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이 대부분인데 초등학생들이 복잡한 위치정보의 내용이라든지 ‘제공’이라는 단어라든지 서비스의 복잡다기한 현상을 길고 긴 이용약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 의사 표시를 한다는 것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위치정보법 해설서도 이 연령의 동의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8세 이하에 대해서 동의는 제26조에 따라 안 받는다 하더라도 통보는 여전히 해야 하는데 8세 이하는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한글을 못 읽는 아이가 대부분입니다. 통보받을 연락처를 실종된 8세 이하 아동이 미리 특정하여 지정하고, 8세 이하 아동이 통보받으라는 것은 위치정보법의 올바른 해석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9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연령대에서도 휴대폰이나 이메일이 없는 아동이 태반인 것으로 보입니다. 9세 이상 14세 미만 아동이 지정을 하고 동의를 하려면 결국 앱을 다운받아야 하고 앱을 다운받으려면 휴대폰이 있어야 하는데 휴대폰을 구매할 수 없는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안심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귀 위원회는 2022년 이전에는 제25조와 제26조 관계, 특히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아동 본인에 대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이런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피심인에 대해서 2022년 이전에 실태점검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었지만 피심인의 서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런 요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주식회사 에잇스니펫 박철우 대표이사께서 이번 시정명령 처분사항과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철우 ㈜에잇스니핏 대표이사

- 반갑습니다. ㈜에잇스니핏 대표 박철우입니다.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인 의견을 드리고자 참석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저희가 ‘엑스키퍼(XKEEPER)’ 서비스를 하는 스타트업기업이며, 오랜 시간 동안 엑스키퍼 서비스를 개발하고 운영해 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을 지키고자 저희 같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기로 저희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동안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시 주셨던 검토의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 화면 등 모든 사항을 수정하여 배포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제공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만, 앱 사용자와 정보주체의 구분에 어려움이 있음을 오랫동안 자녀보호서비스 시장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리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 부모님 앱 이용자의 동의만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고 판단한 이유는 저희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계약한 당사자인 부모님이 부모님의 정보를 가지고 정보주체인 자녀의 기기에 동의 또는 통보 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예를 들어보면 통신사의 ‘내폰찾기’ 서비스의 경우 부모님 명의로 된 핸드폰을 자녀가 사용할 경우 폰 분실 시 폰 찾기를 위한 위치정보 제공 동의를 정보주체가 아닌 핸드폰 계약당사자인 제3자로 보고 게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케이스를 저희 서비스와 한번 연관시켜 보면 같은 기기를 사용하는 자녀이지만 저희 서비스의 정보주체는 자녀가 되고 ‘내폰찾기’ 서비스의 정보주체는 부모님이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으나 이런 가족관계, 특히 자녀·부모 간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자녀들의 인권 및 부모님의 안심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위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견청취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오늘 출석한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주식회사 에잇스니핏 측에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 김효상 구글코리아(유) 대리인

-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말씀하십시오.

○ 김효상 구글코리아(유) 대리인

-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글은 아동 개인위치정보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오늘 주신 사무처 의견도 귀담아 경청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 대한 법률적인 판단 부분은 위치정보법 법률 문언과 입법 목적이 유사한 다른 법률, 그다음에 국제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을 종합하여 판단해 주시기를 양망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은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해당하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동을 대신해서 동의하도록 한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만 이와 달리 판단하시면 사실상 아동이 비토(veto)권을 가지게 돼서 아동이 결정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사안에 처하게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양망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또 있으십니까?

○ 최주선 (주)제이티통신 대리인

- (주)제이티통신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 대리를 하라는 대리하는 규정이고, 제26조는 아이가 실종되었을 경우에 아이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니 간주를 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두 규정의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26조는 잘 아시다시피 생명·신체 보호의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인데, 아이가 게임을 하고 싶어 할 때 또는 아이의 재산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제25조로 가서 8세 이하 아동에게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사무능력자에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26조가 동의에 대한 규정이지 통보의무를 배제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8세 이하 아동이 마치 자기가 미리 지정해서 통보받을 연락처를 지정하고 8세 이하 아동, 한글도 못 읽는 아이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상한 법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디 방통위원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적용하고 사업자들에게 안내하지 않았던 내용인데 이것을 갑자기 작년부터 뭔가 바뀌어서 처분부터 바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또 있으십니까?

○ 박철우 (주)에잇스니핏 대표이사

- 없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견청취에 성실히 임해 주신 피심인 측 의견진술인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모두 오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글코리아 유한회사, 주식회사 제이티통신, 주식회사 에잇스니핏'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진술인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인 퇴장)

이어서 시정조치안과 관련한 사무처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심인 의견과 관련하여 사무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의 동의주체는 원칙적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를 의미하므로 특별한 규정 없는 한 1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권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의결 <붙임 2>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6조와 같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은 14세 미만 아동이 행한 법률행위를 유효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규정입니다. 참고로 위치정보법 해설서에서도 14세 미만의 아동은 자신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이들이 행한 법률행위,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가 해당되겠습니다. 이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 아동이 행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여 아동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의에 관한 별칙에서는 8세 초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치기반서비스 참고 약관에서도 본인인 자녀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실태점검에서 서면점검 시 위치정보법 위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던 타 사업자의 경우에는 아동의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모두 준수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치정보법 제26조와 관련해서 피심인이 다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위치정보법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제25조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법정대리인 규정과 유사하게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위치정보법의 경우에는 제26조와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제26조의 경우에는 8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는 8세 이하의 아동이 동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아라든지 초등 저학년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포함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석됩니다. 제26조의 경우에 피심인의 경우 이것이 실종과 같은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서 급박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위치정보법 제26조에서는 이에 대해서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의미는 긴급성 내지 급박한 보호조치에 한정하지 않는 넓은 개념으로 실종 예방 포함하여서 해당 아동의 생명·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일체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법정대리권은 자녀를 위해 행사하는 것으로서 이에 상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정대리권도 제한됩니다. 따라서 위치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 등 권리 강화를 위해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뿐만 아니라 본인의 동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부모의 양육·교육권이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지만 부모의 자녀감독권이 자녀 의사에 반하여서도 행사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인정하면서도 기본권의 주체인 부모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 발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으로서 자녀교육권은 자녀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되는 것이고, 자녀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설시하고 있습니다. 피심인 진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조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구글코리아(주)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3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구글코리아(유)의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위반행위 즉시 중지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구글코리아(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구글코리아(유)의 경우에는 관련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정액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기준금액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글코리아(유)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위치정보법 규정이 개인정보법 규정과 일부 유사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이 만 14세 미만 아동을 대신하여 동의하도록 하고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서비스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구글코리아(유)에게 위반행위에 대한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해당 위반행위는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보여서 기준금액은 2억 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필수적 조정과 추가적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은 3억 원으로 부과 가능합니다. 과징금(안)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제1안>으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는 안, 그리고 <제2안>으로는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글코리아(유)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구글코리아(유)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300만 원 적용이 가능하고, 달리 가중·감경 사유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고발 여부 검토(안)입니다. 위치정보법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1안>은 구글코리아(유)를 고발하는 안, <제2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19페이지 (주)모바일펜스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위반행위의 중지 등을 포함한 시정명령 부과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주)모바일펜스의 경우에는 자녀안심 앱 매출액이 존재하여 앱 서비스 판매 매출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마찬가지로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부과기준율을 1천분의 15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적 조정과 추가적 조정을 거쳐 최종 과징금 금액은 2,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에 대한 <제1안>은 이를 부과하는 안, <제2안>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각각 과태료 부과 가능합니다. 각각 1차 위반에 해당하여 건별로 300만 원 부과 가능하고, 다만 (주)모바일펜스의 경우에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기 때문에 기준금액의 100분의 30 각각 감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인 600만 원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각각 30%를 감경한 420만 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고발 여부 검토(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주체 동의를 받지 않고 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한 행위, 그리고 위치기반서비스를 신고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1안>은 (주)모바일펜스를 고발하는 안, <제2안>은 실태점검 중 위반사항을 인지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

사진 시정한 점, 그리고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이 위치정보 법과 문언적으로 일부 유사하여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제이티통신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 부과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위치정보법 제19조 제2항을 위반한 (주)제이티통신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고, 앱 서비스 판매 매출액이 관련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부과 기준율과 기준금액을 '중대하지 않은 위반행위'로 판단하여 계산한 결과, 필수적 조정과 추가적 조정을 거쳤을 때 최종 과징금액은 48,969,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이를 부과하는 안이고, <제2안>은 마찬가지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하는 안입니다. 세 번째,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각각 1차 위반에 해당하여 각 300만 원을 건별로 부과가 가능하나, (주)제이티통신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각 30% 감경이 가능합니다. <제1안>은 기준금액대로 600만 원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각각 감경하여 420만 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고발 여부 검토(안)입니다. 정보주체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제1안>의 경우에는 이를 고발하는 안, <제2안>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주)세이프리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정보주체에게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세이프리의 경우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이 가능합니다. (주)세이프리의 경우에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로 인정되어 기준금액의 100분의 70 감경 가능합니다.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 300만 원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기준금액의 100분의 70을 감경한 90만 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에잇스니핏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위반행위의 중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징금 부과(안)입니다. (주)에잇스니핏 역시 앱 서비스 판매 매출액이 존재하여 이를 관련 매출액으로 하여 최종 계산했을 때 최종 과징금은 39페이지와 같이 5,602,000원이 되겠습니다. <제1안>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으로 갈음하는 안입니다. 다음으로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고 통보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주)에잇스니핏 역시 1회의 위반에 해당하여 300만 원을 위반행위 건별로 적용 가능하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각각 30% 감경 가능합니다. 최종 과태료는 <제1안>은 기준금액인 600만 원을 부과하는 안, <제2안>은 법규 위반행위를 시정 중에 있어 각각 30% 감경한 420만 원을 부과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발 여부 검토(안)입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제1안>은 이를 고발하는 안, <제2안>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고발하지 않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시정조치안에 대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1안>과 <제2안>으로 모두 나누어져 있고, 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제1안>과 <제2안>으로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까?

○ 김 현 상임위원

- 예.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사무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사업자 위반사항들이 공통적으로 위반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과 관련해서는 동의를 받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또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 신고를 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 자진 시정이 가능하고, 또 일부 오인이 가능한 점도 있었던 점을 고려해서 시정명령으로 갈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경우에는 안전 시정조치안 보고 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감경하는 <제2안>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5개 업체 모두 <제2안>으로요?

○ 최윤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발 여부와 관련하여서도 시정명령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따로 고발하지 않는 안으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김 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상임위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의 등·하교 여부 및 실시간 위치 파악,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등을 위해 활용하는 자녀안심 앱 서비스가 있습니다. 2021년 3월부터 약 1년 1개월 동안 8개 자녀안심 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 등 제한 관련하여 실태점검을 했고, 법 위반 정황이 있는 구글코리아(유) 등 5개 사업자를 사실조사한 결과, 위치정보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경미하고 과징금과 과태료가 일부 중복 부과되는 점, 법정 대리인의 동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위치정보법 규정이 사업자가 오인할 여지가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시정명령으로 갈음하고, 과태료는 <제2안>으로

하고 고발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무처는 사업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위치 정보법의 법정대리인 동의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법의 명확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지금 보시다시피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서가 제출됐고, 관련 법령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앱 주요 쟁점에 대해서 다수의 법률자문 결과를 받아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치정보와 관련된 조사에서 현재 조치까지 내려지는 경과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 등 국민들의 권익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의견도 듣고 법령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렇듯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현령비현령이 아니라 일관되고 합의제기구의 성격에 맞춰서 어떤 법령이든 고시든 시행령이든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방통위 설치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저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쟁점은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따라서 14세 미만 개인 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제공하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추가적으로 필요한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개인위치정보 수집·활용·제공 시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의무는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안전한 위치정보 활용을 위한 위치정보법상 중요한 규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법정대리인 외 8세 초과 14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치정보법이 해당 아동의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관련 법 규정의 명시적인 내용, 입법취지, 그리고 여러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치정보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동의만으로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에 갈음할 수 없어서 개인위치정보주체인 아동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는 피심인들의 위치정보법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피심인들의 주장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사례에서 14세 미만 아동에 대한 동의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심인들이 개인위치정보 또한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봐서 이를 오인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법 위반의 고의성이 적고 위반행위 내용이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조금 전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명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는 <제2안>, 그리고 과태료 역시 감경하는 <제2안> 고발하지 않는 내용으로 저희가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지금 최종적으로 확인하자면 각 피심인에 대해 시정명령은 원안대로, 과징금 부과안은 부과하지 않는 <제2안>으로, 과태료 부과안은 감경하는 <제2안>으로, 고발 여부는 고발하지 않는 <제2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 7. 기 타

###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 ○ 김 현 상임위원

-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님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통할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2인 위원이 있을 때 위원회가 소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5인일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인이 있을 경우도 2인이 요구했을 때 위원회가 열리는 것이냐, 3인이 있을 때는 1인의 요구가 있을 때도 적용되는 것이냐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5인이 있을 경우 2인의 요구, 그러면 3인의 경우는 1인의 요구가 있을 때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가능합니다.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KBS 한국방송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해서 공사가 근거조항에 명시된 관계자에 해당된다. 그래서 규칙에 의거해서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참고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공문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제안이 있었지만 서면으로 접수된 만큼 저는 의견 진술을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위원회 체제가 있을 때 2명의 위원이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상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3인이 있을 경우 1인의 요구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심의·의결 전에 해당 입법(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일 밤 12시에 마감된 국민참여입법센터의 내용이 여러 경로로 접수가 됐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용산에서도 권고안을 통해서 국민의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고 긴박한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만큼 의견을 제출한 다양한 당사자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견제출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자문 결과를 받고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진술을 들었고, 공개회의에서도 의견진술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4,700건이 접수가 됐고 그중 90%가 통합징수를 찬성하고 분리징수를 반대하는 의견이 접수가 됐습니다. 방통위 접수 개인 의견이 16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성 3건, 반대 통합징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13건입니다. 그리고 기관별 의견모음이 전력공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KBS 시청자위원회 KBS 사우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여성노동자회,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진주여성민우회, 포항여성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총 18건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4,712건 중 90%가 통합징수에 대해서 찬성하고, 분리징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10% 정도 됩니다. 방통위에 접수된 의견중 개인에게 어떻게 통보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면으로 회의를 해야 한다고 의견제시합니다. 특히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

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의견제출 역시 접수하고 그 접수결과를 어떻게 통보하느냐가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는, 지금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다음 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한 의결을 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줄속적으로 처리되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남은 기간, 적어도 4,712건과 방통위에 접수된 개인의견, 그다음에 기관별 의견모음서를 종합 정밀 검토하고, 이에 제기된 내용을 법률자문을 구해서 방송법과 시행령 간에 충돌이 없는지, 그리고 시행령을 개정했을 때 과연 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원활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재허가 과정에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KBS에 대해서 갑자기 징수방법을 변경했을 때 어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는지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시행령을 의결한다는 것은 본 위원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제안을 받을 때는 한 달이 걸렸고, 입법예고는 열흘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일을 하도록 행정청에 권고했는데 이 부분 역시도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보고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때 본 건이 비규제 대상이라고 했던 배경과 접수날짜와 통보받은 날짜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답신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을 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끊임없이 자료요구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서 위원회가 운영된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통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대표한다는 이야기는 위원들의 각각의 의견을 존중해서 심의·의결해야 한다는 점 또한 법 정신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회의를 운영해야 하고 나머지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즉, 여당 추천 몫 한 분과 야당추천 몫 한 분이 있을 때는 두 사람의 의견이 공히 다 반영돼서 2명 이상이 아니라 1명 각각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것이 3인 체제에서 회의운영 방식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5인일 때 3인, 3인일 때는 각각 한 사람 주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상인 상임위원

- 김 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 첫 번째 회의소집과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에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의결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회의소집과 운영은 이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 현 위원님께서 3인 체제 하에서 1명의 요구가 있어도 회의소집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만 그 부분은 법 규정에 맞지 않는 주장으로 생각합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상인 상임위원

- 두 번째 조금 전 KBS에 대한 직접 위원회에 출석해서 의견 진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규칙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심의·의결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자 등에게 안전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금 전에 저희가 심의·의결한 안전에서도 이해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재량규정입니다. 저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인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듣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처분 행위, 즉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는 수신료 납부의무를 지는 국민, 그리고 KBS를 포함한 여러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국민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의견을 청취하였고 KBS도 그 기간 중에 문서로써 의견을 충분히 제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KBS만 별도의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김 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견 진술한 내용들은 저도 이미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논의가 다음 주 월요일에 간담회 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심의·의결 여부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저도 KBS를 포함해서 국민들이 낸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할 생각입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용산에서 국민제안 형태로 받았던 의견과 TV수신료 입법예고 결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총 4,746건이 접수됐는데 개인적으로 본인의 실명, 주소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접수된 것이 16건입니다. 이 중에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것이 3건이고, 반대하는 것이 13건 접수됐습니다. 기관·단체의견이 18건 입니다. 그리고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4,7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분리징수에 찬성은 391건, 8.2% 입니다. 그리고 반대가 4,234건, 89.2%입니다. 사무처에서 분류한 찬반불분명이 121건인데 이것은 2.6%입니다. 불분명은 사실은 전체 모수에서 빼서 퍼센티지를 만들거나 찬반불분명 121건에 대해서 보고를 공식적으로 해서 이것이 찬반불분명한 것인지, 명료한 것인지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보면 90%가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편파적이기 때문에 나는 수신료를 안 내겠다,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방만경영이다, 그리고 TV를 시청하지 않는다, 공영방송 의무를 해태한다, 이런 것으로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신료 통합징수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은 이렇게 될 경우 공영방송의 역할이 축소된다. 그리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통합징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것은 방통위의 기존 입장과 동일합니다. 상위법인 방송법 체계와 맞지 않다. 정치적 의도가 있다. 즉, 방송장악의 의도가 있다는 점이 많은 분들의 지적입니다. 만약 통합징수를 하지 않는다면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타 의견으로 접수된 것이 수신료를 나는 내지 않겠다, 폐지에 동의한다, 그리고 민영화에 반대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 당사자

가 의견진술을 요구하는데 위원 한 분이 반대하고 위원장은 의견을 아직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대표하기 때문에 진행을 담당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인일 때는 2인의 위원이 제안하면 소수의견을, 2명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이야기는 소수의견, 즉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과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에서 추천된 위원 2명의 구조와 그 나머지 원내교섭단체에서 2명이 추천됐을 경우에 상임위원은 4인이고,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해서 회의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2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각각 1명, 1명이 회의를 소집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야당 2인이 요구했을 때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협의제, 합의제기구의 정신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원장 한 분이 이미 국민의힘이 추천한 당시 야당이었고 현재는 여당이 된 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이미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이고 그다음에 야당추천 몫으로 된 분은 지금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상태에서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인이 당시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입니다. 그래서 3인이 된 구조에서 똑같이 2인이 요구해야만 된다면 야당, 소수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될 수 없는 위원회일 것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편파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 정신은 소수의 의견도 충분히 논의해서 그 결정을 협의하고 합의하되, 만약에 합의가 안 될 경우 다수결의 의결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진술이 곧 의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1년에 예를 들어 6,000억 원이 2,000억 원으로 줄어들 수 있고, 그래서 1년에 4,000억 원 징수금액이 줄어들면 앞으로 윤석열 정부 하에 임기가 3년에서 3년 반 남았다고 치면 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오고, 1조 5,000억 원의 손실이 온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공적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용산의 권고 또한 있습니다. 이 권고 중에 방통위가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용산의 TV수신료 징수방안 개선 권고안이 2가지로 나왔습니다. 30년간 유지해온 수신료, 전기요금 통합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의 불편 호소와, 얼마나 국민이 불편하다는 호소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호소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변화 요구를 반영해서 분리징수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한 이행방안을 마련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경영 등의 문제 지적과 함께 수신료 폐지 의견이 가장 많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책임 이행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 이것이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된 권고안이 2가지입니다. 그런데 관련법령 개정만 덜컥 내놓고 공적책임 이행 보장방안은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은 권고안, 반쪽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고안에 대한 충분한 보장방안도 마련하지 않았고, 용산에서 국민제안 했던 것을 입법예고를 통해서 4,746건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을 3인 중 2인이 찬성하고 1인이 반대하면 그냥 무시해서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조항 규칙에 보면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것은 특별위원회이지만 여기의 법정신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장 또는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분의 1 이상의 요구, 이런 규칙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5인이 있을 때 2인이 요구해서 회의소집이 서면회의가 대면회의로 될 수 있고 의견진술이

가능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똑같이 5인일 때 2인, 3인일 때 2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경직된 해석이다. 방통위 설치법 정신에 맞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제가 오늘 간곡하게 28일 날 위원회가 의결하기로 했던 것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의결 일정을 늦춘 만큼 의견 진술을 들어서 법적인 불비함이 없는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 내린 결과가 지금 현재 진행하는 방통위 사무처의 의견과 방통위 위원회 내용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또한 국민여론이 어떤지를 충분히 살펴서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십시오. 의견 진술은 제가 말씀드린 한국방송공사뿐만 아니라 EBS와 한국전력공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3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1인이 요구해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다음에 KBS의 대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 의견제출할 대면회의를 요구하셨는데 각각 절차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해서 결정하고 통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 현 상임위원

- 통보가 아니라 협의해 주십시오.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차기 회의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8. 폐 회

○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 이상으로 2023년도 제2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6분 폐회 】